

2024년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2024년

좋은날노인복지센터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안내

별첨

1. 2024년 방문요양 등급별 1일 급여비용 (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2024년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2. 2024년 방문요양 등급별 1일 급여비용 (원)

방문당 시간	24년 수가	본인 부담 (15%)	본인 부담 (9%)	본인 부담 (6%)
30분 이상	16,630	2,495	1,497	998
60분 이상	24,120	3,618	2,171	1,447
90분 이상	32,510	4,877	2,926	1,951
120분 이상	41,380	6,207	3,724	2,483
150분 이상	48,250	7,238	4,343	2,895
180분 이상	54,320	8,148	4,889	3,259
210분 이상	60,530	9,080	5,448	3,632
240분 이상	66,770	10,016	6,009	4,006

3. 방문목욕의 1회당 급여비용

구분	금액(원)	본인부담금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내)	84,670	12,701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내)	76,340	11,451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47,670	7,151

4.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분	비율
일반	15%
기타 의료수급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 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9%
기초수급자	0%

제6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면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또는 그 밖의 여러 가지 감경조건을 적용받아 부과 한다.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 (2) 의료급여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정해진 %를 경감한다.
-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되는 수가를 적용한다.
-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비로 한다.
-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 (1) 권리
 -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 다)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2) 의무
 - 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 의무
 - 다)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 마)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 가)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 나)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다)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라)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수납 한다.
-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 입금으로 반환한다.

제7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다.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 라. 변경절차는 계약서(표준약관) 또는 변경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와 기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8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서비스의 내용

- (1)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정서지원활동 등을 지원한다.

나. 방문요양 서비스의 세부사항

- (1) 신체활동 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기저귀 교환, 식사 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 보조 등
- (2) 일상생활(가사)지원서비스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장보기 등
- (3) 개인 활동 지원서비스
 -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각종 정보안내, 기타 일상 업무 지원 등
- (4)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 (5) 인지기능 지원서비스
 - 행동변화 대처 등
- (6)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가 아닌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다.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 (1) 기관의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를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 부담 이용료를 전액 면제하며, 의료급여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전하는 경감대상자는 정해진 %를 경감한다.
-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수급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항목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 (3)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제반비용의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